조 문	현 행	개 정	비고
학칙 제23조 (건과)	2017.12.8.) ② 전과는 학과별 전입과 입학정원 및 전출과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하며 전입과의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8.22.,2017.3.1.) ③ 전출과에서 취득 한 학점은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전입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따로 정한다. ④ 〈삭제〉 ⑤ 2,3학년 학제가 상호 다르거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연계교육과정입학자, 교직과정이 설치된 과의 전과는 불허한다. (개정 2003.3.3., 2016.8.22.)	자가 신청하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과에 의한 경우는 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8.22., 2017.12.8.,2023.10.11.) ② 전과는 전입과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8.22., 2017.3.1., 2023.10.11.) ③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입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여부는 전입과의 학과장이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총장이 정할수 있다.(2023.10.11.)	
학칙 제32조 (교과의 이수단위)	② 졸업에 필요한 전문학사의 최저 이수학점은 수업연한이 2년 제인 과는 75학점 이상, 3년제 과는 110학점 이상으로 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최저 이수학점은 1년제 학과는 20학점이상, 2년제 학과는 55학점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공,교양교과는 학과에서 개설한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③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하며 24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 24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다. 계절학기 이수학점은 정규학기 학점과는 별도로인정한다.(개정 2014.3.1.)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계절학 기의 이수학점은 정규학기 학점과는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매학기 9학점 이상을 이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1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 다.(개정 2023.10.11.) ④ (현행과 동일)	
학칙 제37조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 험,실기시험등을 병용하되 그실시(중간,기말,수시시험 등)에	① 시험은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는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특성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 작성	

조 문		현 행			개 정		비고
	관하여는 총장이 따 ② (생략) ③ (생략)	로 정한다.		등에 의하여 평가할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 수 있다.(개정 202	3.10.11.)	
				④ 학과의 특성에 따라 (신설 2023.10.17		험을 부과할 수 있다	
= L51	0 (5151151 501)			(-1-11-1 E O)			
학칙 제38조 (성적평가)	는 D급 이상으로 요가 없는 의무 이 를 급제로 할 수 있 9단계 평점방법	한다. 다만, 성적평기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 ト를 점수로 표시할 필 실습 등에 있어서는 P	는 D급 이상으로 : 요가 없는 교과 N(Nonpass)를 낙자 점평균 산출에서는	한다. 다만, 성적평기 목에 대한 사항은 세로 평가하고, 취득현 제외한다.(개정 201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 사를 점수로 표시할 필 은 P(Pass)를 급제, 한 학점은 인정하되 평 5.3.1.,2023.10.11.)	
	등급	배점	평점	9단계 평점방법			
	Δ+	100-95	4.5	등급	배점	평점	
	(중략) P	(중략)	(중략) 불계	A+ (중략)	100-95 (중략)	4.5 (중략)	
	P		돌계	P (8 =1)	(6 =1)	(& ㅋ/ 불계	
	③~⑤ (생략)			· ③~⑤ (현행과 동일)		_ = "	
학칙 제39조 (성적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 부정행위에 의한 2. 수강신청을 하지 3. 출석미달 과목의 4. 〈삭제〉(삭제 20	: 성적 아니하고 취득한 성 성적		3. 출석미달 과목의 4. 〈삭제〉(삭제 20 5. 미등록자가 취득 6. 편입생의 전적교 는 과목의 성적 (신 7. 매 학기 24 2023.10.11.) ② 학기당 수강신청	한 성적 아니하고 취득한 성 성적 15.3.1.) 한 성적 (신설 2023 성적 중 우리 대학 실 2023.10.11.) 1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초과한 교과	성적 3.10.11.) 남 총장이 인정하지 않	

조	문	현 행	개 정	비고
			다. (신설 2023.10.11.)	
학칙 제41조 (졸업 및 〉〉(졸업)		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②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4.3.1.) 1. 1학년 수료: 30학점 이상(개정 2019.3.1.,2023.1.1.) 2. 2학년 수료: 75학점 이상(개정 2019.3.1.) 3. 3학년 수료: 110학점 이상(개정 2019.3.1.)	인 학과의 경우 75학점 이상으로 하고, 3년인 학과의 경우 11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③ 전문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교양교과 이수학점은 수업연한 이 2년인 학과의 경우 교양필수 2학점을 포함하여 총 7학점 이상, 3년인 학과의 경우 교양필수 2학점을 포함하여 총 11 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④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수업연한이 1년인 학과의 경우 20학점, 2년인 학과의 경우 55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학과에서 개설한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졸업할 수 없다. (개정 2023.10.11.) ⑤ 〈삭제〉(삭제 2023.10.11.)	
학칙 제41조의2 (후기졸업)		〈신설〉	졸업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후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0.11.)	
학칙 제41조의3 (학위수여, ·	취소)	⟨신설⟩	① 전문학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칙 제41조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을 모두 취득한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23.10.11.) ② 전문학사과정 중 인증 학위과정의 경우, 인증학위 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칙 제41조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졸업학점및 졸업요건을 모두 취득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23.10.11.)	

조 문	현 행	개 정	비고
학칙 제41조의4 (수료)	〈신설〉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학칙 제41조 제4항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2에 해당하는학사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23.10.11.) ④ 총장은 제41조의3의 제1항,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를받은 자가 해당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받은 경우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수 있다.(신설 2023.10.11.) 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요건이 미충족된 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할수 있다. ② 전문학사과정의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학점은다음각호와 같다. 1. 1학년수료: 30학점이상 3. 3학년수료: 110학점이상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학점은다음각호와 같다. 1. 1학년수료: 20학점이상 2. 2학년수료: 55학점이상	

[붙임.7]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조 문	현 행	개 정	비고
학칙시행세칙	① 교육과정은 학칙 제29조에 의거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편	① 교육과정은 학칙 제29조에 의거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편	
제12조(교육과정편	성 운영한다. 교양교과의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성 운영한다. 교양교과의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성 및 운영)	구 분 교양필수 교양선택 계	구 분 교양필수 교양선택 계	
	2 년제 2 5-6 7-8	2 년제 2 5-6 7-8	
	3 년제 2 9-12 11-14	3 년제 2 9-12 11-14	
	(개정 2003.3.3.,2019.3.1.)	(개정 2003.3.3.,2019.3.1.)	
	교양선택의 사외동사교과목을 이수하면 한 개의 교양과목을 나 - 신할 수 있다 단, 유학, 대학간 연계교육, 기타 학생들의 진	교양선택의 사회봉사교과목을 이수하면 한 개의 교양과목을 대 신할 수 있다 단, 유학, 대학간 연계교육, 기타 학생들의 진	
		· 선월 수 있다 년, 규익, 네익긴 선계교육, 기다 익성들의 선 · 로를 위해 교양교과의 편성을 변경하여 이수하고자 할 때는	
	교양교과 총 이수학점, 과목당 학점, 교과목명 등을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재편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3.1.,2010.3.1.)	2009.3.1.,2010.3.1.)	
	교양교과 편성시 다음 3개 분야의 인증을 위한 교과목을 개설		
	한다.	②~⑨ (현행과 동일)	
	인증분야 어학 컴퓨터 인성		
	교과목 외국어회화 정보관련과목 사회봉사		
	②~⑨ (생략)		
학칙시행세칙	각 이수과목의 성적을 출석 평소학습성적 시험성적을 종합하	학업의 성적은 출석, 수업태도, 과제 및 정기시험 성적 등을	
제23조(성적평가빙	여 산출하되 해당학기 성적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	
법) 〉〉(성적평가)	① 수강신청을 한 해당 과목의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이상		
	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 교과목 담당 교원은 자신이 담당한 교과목의 학업성적 평가	
	② 교, 강사는 강의계획서를 작성, 사전지도계획을 철저히 수립 하여 시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하여 시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3.1.)	② 정기시험(중간,기말시험)의 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	
	③ 학업성적평가는 출석성적, 학습태도, 과제물 및 시험성적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객관성과 타당도, 신뢰도		
		③ 모든 교과목의 최종 평가점수 중 출석성적의 반영비율은 만	
		점의 20%로 하고 정기시험(중간, 기말시험), 수시시험 및	
	되, 수시평가, 종합평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		
	- 다.(개정 2007.3.1.,2015.3.1.) ④ 교 간사는 주과신 시험과 갠과신 시험을 병용하여 전절하	2007.3.1., 2015.3.1., 2023.10.11.) ④ 실험실습 및 실기 교과목의 경우 시험을 부과하지 않고 실	
	성적평가를 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의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		
	을 당하지 않도록 대필, 점역, 확대 등의 지원을 통해 평가		

조 문	현 행	개 정	비고
	할 수 있다.(개정 2011.3.1.) ⑤ 시험 등 평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단, 실험실습 및 실기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성적만으로도 이를 부여할 수 있다. ⑥ 현장실습은 학과장 책임하에 실습지도교수를 배정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3.3.,2019.3.1.) ⑦ 학과장은 사전에 산업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3.1.) ⑧ 현장실습기간은 계절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⑤ 성적분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3.3.3.)(삭제 20043.1.)(신설 2012.8.27.)(개정 2013.10.16.)	환산 기준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0.11.) ⑥ 〈삭제〉(삭제 2023.10.11.) ⑦ 〈삭제〉(삭제 2023.10.11.) ⑧ 〈삭제〉(삭제 2023.10.11.) ⑨ 〈삭제〉(삭제 2023.10.11.)	
학칙시행세칙 제23조의2 (성적평가의방법)	 <신설〉 	① 성적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등급별 평가비율은 우리 대학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른다, 단,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10% 안의 범위에서 평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는 제1항과 관계없이 성적평가 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교과목 2. 학점교류 교과목 3. 장애학생 및 외국인유학생의 성적평가 4. 기타 성적평가 비율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발생할 경우, 총장의 결재를 받아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할수 있다.	
학칙시행세칙 제24조 (성적불인정)	성적불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석미달과목의 성적 2. 미등록자가 취득한 성적 3. 편입생의 전적교 성적 중 총장이 인정하지 않는 과목의 성적 전부 4. 시험 중 부정행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4. 〈삭제〉(삭제 2023.10.11.)	

조 문	현 행	개 정	비고
	5. 수강(재수강 포함)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 6. 소정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은 수강신청시 하단과목 부터 취소		
학칙시행세칙 제25조 (성적평가표 제출))〉(성적입력 및 성 적평가표의 제출)	해학기에 평가한 성적을 대학에서 정한 기간동안 웹상에서 성적을 입력한다.② 입력이 종료되면 최종확인 검토를 한 후 1부를 출력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전공과목은 해당학과를 경유하여 제출한다.(개정 2003.3.3.,,2004.3.1.,2019.3.1.)	② 교원은 성적입력이 완료되면 최종 검토 후 성적마감 처리를 하고 성적평가표 1부를 출력하여 기명날인 후 학과사무실을 경유하여 교무처로 제출한다.(개정 2003.3.3., 2004.3.1., 2019.3.1., 2023.10.11)	
학칙시행세칙 제26조 (시험)	다.(개정 2007.3.1.) ② 중간시험은 매학기 전체 수업일수 중간지점에 실시하고 기말시험은 학기의 마지막 주에 실시한다.(개정 2007.3.1.) ③ 추가시험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 시행한다. 1. 추가시험은 학기별로 1회 실시하되 학과의 요청이 있을	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23.10.11.) ② 정기시험인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은 학사일정에 따라 매 학기 8주차, 15주차의 해당 수업시간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강의계획서에 기술된 일정에 따라 달리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07.3.1.,2023.10.11.) ③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기간 중 학칙시행세칙 제52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시행한다. 1. 추가시험은 학기별로 1회 실시하되 학과의 요청이 있을때 실시하며 실시에 따른 제반절차는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1주일 전에 공고한다. 2. 추가시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생은 추가시험원을 작성하여 학과를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응시한다.(개정 2003.3.3.,2019.3.1.) 3. 추가시험원 제출 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학과장이 확인한 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3.1.) 4. 추가시험은 재학기간 동안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성적	

조 문	현 행	개 정	비고
학칙시행세칙 제27조 (성적평가방법 및 평가물의 보관)	① 교강사는 강의계획서를 근거로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을 학과 및 학생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개정 2004.3.1.) ② 교강사는 해당과목 본래의 수업시간에 평가를 진행하며 해 당 평가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 야 한다.	사유를 고려하여 정하되 정기시험 만점 대비 80%~10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신설 2023.10.11.) 8. 공적증빙이 가능한 사유로 학사일정 내 추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미응시 시험의 성적처리는 기취득한 정기시 험(중간,기말시험)성적을 근거로 형평성을 위배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3.10.11.) 9. 모든 추가시험의 사유는 서류로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 에만 인정한다. (신설 2023.10.11.) ① 교원은 자신이 담당한 교과목의 수업 및 평가정보를 강의계 획서 및 평가계획서에 명시하여 수강신청 전에 학생들에게 공지 해야한다.(개정 2004.3.1., 2023.10.11.) ② 교원은 자신이 담당한 교과목 수업시간 내에 정기시험(중 간, 기말시험)을 진행하며, 평가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 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③ 평가 후 평가 피드백 및 수업을 진행하여 해당 수업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평가결과물은 성적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학과에 제출하고 보관한다.(신설 2009.3.1.) 	백을 포함한 수업을 진행하여 정기시험 진행주차의 수업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3.10.11.) ④ 〈삭제〉	
학칙시행세칙 제28조 (수험생의 유의사항)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동일) : 항목별 행 정리 요청	
학칙시행세칙 제29조 (부정행위)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동일) : 항목별 행 정리 요청	
학칙시행세칙 제30조 (성적열람 및 성적 이의신청)	성적 열람 및 성적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다. ① 매학기 학업성적은 학사일정에 의하여 웹상에서 성적열람을 할 수 있다.(개정 2006.3.1.)	재학생의 학업성적은 매 학기 학사일정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 열람할 수 있으며, 성적이의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은 매 학기 학사일정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 수강과	

조 문	현 행	개 정	비고
	 ② 재학생은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과를 통해서 담당교강사에게 직업 요구하고, 학교에서 정한 기한내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성정을 정정할 수 있다. 담당교강사는 성적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정정여부를 판단하여교무처에 성적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기간은이의신청 개시일을 포함하여 3일간으로 한다.(개정 2004.3.1.) ③ 성적표가 필요한 때에는 일반 증명발급 절차에 따른다.(개정 2006.3.1.) 	을 통해 학업성적을 열람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2023.10.11.) ② 학업성적 열람 후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당학기 성적 이의신청 기간 중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교과목 담당교원은 접수된 이의신청을 면밀히 검토확 인하여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총장의 승인을 거쳐 성적을	
학칙시행세칙 제33조 (학점인정)	①~④ (생략)	①~④ (현행과 동일) : 항목별 행 정리 요청	
학칙시행세칙 제38조 (학사경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학기 말에 학사경고를 한다. 1. 당해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00미만인 자 2. 매학기당 취득한 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 단, 졸업유보자의 이수학점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학사경고자는 다음학기 개강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학기 성적이 확정된 이후 학 사경고를 한다. (개정 2023.10.11.) 1. 당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00미만인 자 2. 전문학사과정 학생은 당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당학기 취득학점이 9학점 미만인 자. 단, 교육과정 이수를 고려하여 학기당 취득학점 기준의 예외 가 인정되는 자(졸업유보자, 특정 학기의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학사경고자는 다음학기 개강 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학칙시행세칙 제42조 (졸업 및 학위수여)	1. 재학기간 중 학제별 수업연한에 맞게 등록을 마친 자	학칙 제29조에 따라 학과별 전공교육과정 및 현장중심의 역 량 및 직부(NCS)기반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 3~4. (현행과 동일)	

조 문	현 행	개 정	비고
학칙시행세칙 제43조 (수료)	학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수료로 인정할 수 있다. ① 등록을 필한 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1. 1학년 수료: 27학점 이상(개정 2019.3.1.) 2. 2학년 수료: 75학점 이상(개정 2019.3.1.) 3. 3학년 수료: 110학점 이상(개정 2019.3.1.) ②~③ (생략)	학칙 제41조의4에 의거 수료로 인정할 수 있다. ① 등록을 필한 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1. 1학년 수료: 30학점 이상(개정 2019.3.1.,2023.1.1) 2. 2학년 수료: 75학점 이상(개정 2019.3.1.) 3. 3학년 수료: 110학점 이상(개정 2019.3.1.) ②~③ (현행과 동일)	
학칙시행세칙 제45조(전과)	① 학칙 제23조에 의거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3.1.) 1. 〈삭제〉 2. 전과를 신청할 때에는 지도교수 소견서와 보호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3.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55조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삭제〉(개정 2003.3.3.) ③ 취득교과목의 학점인정은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과 비교하여 인정여부를 학과장이 검토하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인정할 수 있다. ④ 전과한 당해학기 휴학은 불허한다.	2. 〈삭제〉(개정 2023.10.11.) 3. 〈삭제〉(개정 2023.10.11.) ② 〈삭제〉(개정 2003.3.3.)	